

#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4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윤상현 · 임종득  
윤한홍 · 강명구 · 고동진  
김성원 · 김종양 · 김용태  
윤재옥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·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,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·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, 국군포로·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

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).

##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방부장관의”를 “국가보훈부장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방부장관이”를 “국가보훈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전단·후단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5의 제목 중 “예우”를 “예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, “예우를 할 수 있다”를 “예우를 하고, 「상훈법」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사회적응교육) <u>국방부장관</u>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위로지원금) ① <u>국방부장관</u>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국방부장관</u>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(역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)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(역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)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(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라 위관급 장교, 준사관 및</p>	<p>제6조의2(사회적응교육) <u>국가보훈부장관</u>은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위로지원금) ① <u>국가보훈부장관</u>은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국가보훈부장관</u>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.

⑥ ~ ⑦ (생략)

제13조(주거지원)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 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(이하 “전세권등”이라 한다)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.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주거지원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국가보훈부장관의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국가보훈부장관이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

제15조의3(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)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국군포로에 대한 예우)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,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,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역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9조(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·재개)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 ~ 3. (생략)

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

제15조의3(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)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5조의5(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예우를 하고, 「상훈법」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·재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  
-----

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.

1 ~ 3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 ~ 3. (현행과 같음)